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시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 3. 7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3. 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3.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제안이유

○ 중동 아파트지구는 1978년 12월 22일(건설부 제412호)에 최초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 3월 22일(경기도 제104호)에 재결정되었습니다.

○ 중동 아파트지구는 1980년대 초반에 저층아파트로 건립되었으며, 건축 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천시교육청과의 협의결과 초등학교 1개 교 신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요하기 위해 아파트지구의 지구계획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

- 부천시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건축 이후 2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안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부지를 아파트지구 내로 편입하여 일부 중학교 면적을 축소하고 초등학교 1개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임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호(아파트지구 지정)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현재 있는 중학교 부지는 줄어들고 초등학교 부지가 새로 마련되는 것인가?	○ 네
○ 부천시교육청과의 협의는?	○ 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임
○ 용도지역, 지구변경시 건축용적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 용적률이 높아짐
○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 측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 조합 측에서 현 중학교를 철거 후 신축시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
○ 추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채택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불임서류

 의견서 1부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제577호	안건명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부천시장	의결 연월일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2. 3. 20)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중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건축 이후 2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안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과 협의결과 초등학교 1개 교 신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의 지구계획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2002년 3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제577호
의결년월일	2002. 3. 20 (제94회)

제출년월일 : 2002. 3. 7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중동 아파트지구는 1978년 12월 22일(건설부 제412호)에 최초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 3월 22일(경기도 제104호)에 재결정되었습니다.

- 중동 아파트지구는 1980년대 초반에 저층아파트로 건립되었으며, 건축 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천시교육청과의 협의결과 초등학교 1개 교 신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의 지구계획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

- 부천시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건축 이후 2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안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부지를 아파트지구 내로 편입하여 일부 중학교 면적을 축소하고 초등학교 1개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임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호(아파트지구 지정)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안)

□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 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19,735,359.50	—	19,735,359.50	100.0
	일반주거지역	9,110,807.10	감) 195,481.2	8,915,325.90	45.2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1종 일반주거지역	841,837.00	—	841,837.00	4.3
	2종 일반주거지역	5,551,615.00	—	5,551,615.00	28.1
	3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9,831.40	—	649,831.40	3.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8,507.80	—	188,507.80	1.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41,464.20	증) 195,481.2	3,236,945.40	16.4
	준주거지역	351,297.00	—	351,297.00	1.7

○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아파트지구	중동 883번지 일대	175,000	경기도고시 제104호 (82. 3. 22)
변 경	아파트지구	중동 883번지 일대	195,481.2	(증) 20,481.2

□ 결정사유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m ²)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중동 883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95,481.2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의 세분·지정

○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유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아파트지구	지구개 및 면적 변경 175,000m ² ⇒ 195,481.2 (증 20,481.2m ²)	중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상 부천시교육청과의 협의결과 초등학교 1개 교의 배치에 따른 지 구계 확장 변경

□ 참고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 학교(부천중학교), 도로(중로2~14호선, 소로1~36)
- 시행자 :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자목별 토지 편입현황

구 分	계	대 자	도로	학 교
면적(m ²)	195,481.2	159,918.5	10,157.2	25,405.5
필 지 수	10	4	4	2
구성비(%)	100	81.8	5.2	13.0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 고
면적(m ²)	195,481.2	35,562.75	159,918.5	
필지 수	10	10	4	
구성비(%)	100	18.2	81.8	

□ 기대효과

- 노후건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유토지의 효율적 이용 여건 마련 집단 민원해소

부천시도시계획총괄도

축적 = 1:50,000

